##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05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 박용갑·조 국·황정아

황 희·조승래·장종태

전용기 • 허 영 • 박희승

안규백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법을 제정함.

하지만 현재 참전유공자의 평균연령은 6·25전쟁 참전자 90세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또한 감소할수밖에 없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동 단체의 회원 자격이 없으므로 단체 활동에 제한이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법률 제 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6·25참전유공자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를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사망시 유족 중 1인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과 참전유공자의자의 사망시 유족 중 1인"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회원의 자격) 제2조에 따	제19조(회원의 자격)
른 6 · 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u>6·2</u> 5전쟁 참전유공자와 참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전유공자의 사망시 유족 중 1
<u>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u> 는	인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에
각각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따른 사람과 참전유공자의 사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u>망시 유족 중 1인</u>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	
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	
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	
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	
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